##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68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김주영·김태선·박홍배

박상혁 • 이학영 • 강준현

김형동 • 문정복 • 박균택

손명수 · 정태호 · 허성무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 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①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	
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	
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	
업일( <u>2025년 12월 31일</u> 이전인	<u>2027년 12월 31일</u>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	
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	
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	
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부터 계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